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1조(총칙)

①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로 부터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중 저연령자의 계약연령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의 가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신체관련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계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가입대상자)

①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가입대상자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2. 본인의 배우자(가입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최초 계약시 제1항의 가입대상자중 본인만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배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가입대상자로 합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의 호적상 부모
4.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제4조(대표 계약자의 지정)

①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은 대표계약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약에 의하여 5년 자동갱신 되는 보장보험료는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련 담보의 경우 연령증가와 의료비상승률에 연동되어 갱신시점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 납입보험료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배우자가 추가되는 경우 위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이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제1항의 보상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계약에서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 함은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군, 해경 등이 공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조(후

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이 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 수익자의 지정)

①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상해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상해 사망 ·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사망보험금),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상해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위의 제1항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집적적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제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교통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제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교통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

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5.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상해1】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5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6.상해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 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7.중대상해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사고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 '중대상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중대상해 치료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2】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2】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3. 척수손상 : 척추(脊椎)에 가해진 충격에 의한 척추의 탈구·골절(【별표-상해2】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부터 신경증상이【별표-상해3】의 ASIA(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미국 척수손상협회) 분류표의 A또는 B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 받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중대상해치료비용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8.상해 간병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간병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기간	31일~60일	61일~90일	91일~120일	121일 이상
지급금액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200%	가입금액의 300%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상해 간병비용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간병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상해 가족생계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1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상해 가족생계자금)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상해가족생계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 가족생계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상해 가족생계자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0.골절 · 화상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상해4】(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나 【별표-상해5】(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골절 및 화상 치료비용으로 20만원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상해5】(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시 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및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질병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체결시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

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항(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2. 질병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일부을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질병1】에 정한 장해상태 (이하 「질병중증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질병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정한 질병중증장해라 함은 【별표-질병1】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질병1】의 2.~10.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 발병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질병 소득보상금은 매년 장해진단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상병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3. 개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4조(인식불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및 제5조(활동불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인식불명」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인식불명」또는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때에는 인식불명 또는 활동불능 상태 진단후 18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안,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인식불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인식불명」이라 함은 【별표-질병2】에서 정한 기질성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또한 치매로 인하여 아래의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별표-질병3】의 각 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ㄱ.【별표-질병3】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ㄴ.【별표-질병3】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ㄷ.【별표-질병3】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ㄹ.【별표-질병3】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ㅁ.【별표-질병3】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2.【별표-질병4】에 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인식불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활동불능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종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제1호를 포함하고 제2호의 ㄱ.~ㄹ.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질병3】「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다음의 ㄱ.~ㄹ.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ㄱ.【별표-질병3】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 ㄴ.【별표-질병3】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 ㄷ.【별표-질병3】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 ㄹ.【별표-질병3】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② 「활동불능」 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4. 질병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3.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4. 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2대질병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최초로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정한 금액을 2대질병 치료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가입후 1년이내	가입후 1년초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② 제1항의 경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질병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6. 2대질병 치료비용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최초로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2대질병 치료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질병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7.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7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중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기타 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 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 피부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2">지급보험금</td></tr>
<tr><td>가입후 1년이내</td><td>가입후 1년초과</td></tr>
<tr><td rowspan="2">암
진단시</td><td>기타피부암
이외의 암</td><td>가입금액의 50%</td><td>가입금액 전액</td></tr>
<tr><td>기타피부암</td><td rowspan="2">가입금액의 5%</td><td rowspan="2">가입금액의 10%</td></tr>
<tr><td colspan="2">상피내암 진단시
경계성종양 진단시</td></tr>
</table>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8. 암진단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6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중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기타 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암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급보험금</th></tr>
<tr><td rowspan="2">암
진단시</td><td>기타피부암
이외의 암</td><td>가입금액 전액</td></tr>
<tr><td>기타피부암</td><td rowspan="2">가입금액의 10%</td></tr>
<tr><td colspan="2">상피내암 진단시
경계성종양 진단시</td></tr>
</table>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9.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 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 피부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암수술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2">지급 보험금</td></tr>
<tr><td>가입후 1년이내</td><td>가입후 1년초과</td></tr>
<tr><td rowspan="2">암
수술시</td><td>기타피부암
이외의 암</td><td>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50%</td><td>수술 1회당
가입금액 전액</td></tr>
<tr><td>기타피부암</td><td rowspan="2">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5%</td><td rowspan="2">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td></tr>
<tr><td colspan="2">상피내암 수술시
경계성종양 수술시</td></tr>
</table>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수술을 받은 경우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0. 암수술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암수술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암 수술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전액
	기타피부암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
상피내암 수술시 경계성종양 수술시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수술을 받은 경우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1. 암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

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7조(암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암입원 급여금</td></tr>
<tr><td rowspan="2">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td><td>기타피부암
이외의 암</td><td>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td></tr>
<tr><td>기타피부암</td><td rowspan="2">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의 20%</td></tr>
<tr><td colspan="2">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td></tr>
</table>

②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2. 암입원일당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6조(암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 급여금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기타피부암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의 20%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②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3. 질병 간병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 간병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입원기간	31일~60일	61일~90일	91일~120일	121일 이상
지급금액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200%	가입금액의 300%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질병 간병비용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 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간병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3.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4.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4.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3. 성병
1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질병10】에 정한 비뇨기계 장해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 함은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군, 해경 등이 공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5. 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이하「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약제비
2. 제1항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해당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 1일당 제1항,제2항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⑦ 제1항,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제2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

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3.성병

14.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질병10】에 정한 비뇨기계 장해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 함은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군, 해경 등이 공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6. 질병 가족생계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질병 가족생계자금)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서 정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질병 가족생계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 가족생계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질병 가족생계자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재물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1조 (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별로 각각의 재물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2항의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재물관련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을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0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특별약관)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

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특별약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위의 제12조(계약후 알릴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라 합니다)와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 「붕괴 등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제2호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파열,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 : 폭발,파열,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이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 주택으로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3. 병용주택 건물 및 그 수용가재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대문,담,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네온사인,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 및 붕괴 등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 또는 폭발, 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5.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헤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10.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5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5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

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6조(임시주거비용)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화재손해 및 붕괴등의 손해를 입고 제5조(지급보험금)에 따라 결정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임시주거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임시주거비용은 1사고당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화재손해 또는 붕괴 등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화재 및 붕괴손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또한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재물손해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2. 풍수재 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이하「풍수재 손해」라 합니다)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이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 단독주택
   -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 주택으로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3. 병용주택 건물 및 그 수용가재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전시용 자동차는 제

외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경우
   -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대문,담,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네온사인,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중 적은 금액을 빼고 제6조(지급보험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6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7조(임시주거비용)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풍수재 손해를 입고 제6조(지급보험금)에 따라 결정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0% 해당액을 임시주거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임시주거비용은 1사고당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풍수재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풍수재 손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또한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재물손해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3.도난손해 및 잠금장치 교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

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가재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 그림, 골동품, 조각물. 다만,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6.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4조(도난손해 보험금)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개당, 점당, 조당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잠금장치 교체비용)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제4조(도난손해 보험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을 잠금장치 교체비용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도난품의 귀속)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재물손해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1조 (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기명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여 각각의 배상책임 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2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

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을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

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

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의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
2.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② 위 제1항에서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

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2.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2.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기명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동숙자,일시 방문자나 기명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폭발,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냉난방장치,습도조절장치,소화전,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또는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 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의 시가(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

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의 분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단,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비용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용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1. 벌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2.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

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1】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 70일, 140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사망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3.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마다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4. 면허정지 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5. 면허취소 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6.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보험료 충당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보장보험료 :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특별약관(단, 1.자동차관련 특별약관의 손해는 제외합니다.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적립보험료 : 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에서 정한 대체납입을 목적으로 적립기간동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관련보험료 : 보통약관 제2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및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로써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단, 최초계약시의 초회 보험료는 제외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추가보장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추가적립보험료 : 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에서 정한 대체납입을 목적으로 계약자가 적립기간동안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⑤ 적립기간 : 이 특약이 부가된 날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적립순보험료 : 적립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 해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납입해당월 말일 기준의 제4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이하 「적립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범위내에서 보장보험료를 납입해당월 다음달 10일이내에 자동으로 대체납입합니다

② 계약자가 자동차관련보험료를 납입 해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납입해당월 말일 기준의 적립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자동차관련보험료를 납입해당월 다음달 10일이내에 자동으로 대체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보장보험료의 대체납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적립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즉시 대체하여 드립니다.

④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대체납입이 납입해당월 말일 기준의 적립해약환급금의 부족으로 보장보험료 및 자동차관련보험료의 일부만 대체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순서에 의해 처리합니다.

1. 자동차관련보험료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빠른 순서대로 먼저 대체 납입합니다)
2. 보장보험료

⑤ 위의 제1항에서 제4항에 의한 대체납입은 적립해약환급금이 제7조(약관대출)에서 정한 약관대출원리금 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3조(적립금의 중도 인출)

계약자는 적립기간 개시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매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적립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당시 적립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6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4조(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회사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

(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로 적립한 금액(제2조(적립금에 의한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보험료로 대체 납입된 경우 및 제3조(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따라 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에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 율
1년 미만	약관대출이율 - 4%
1년 이상 2년 미만	약관대출이율 - 3%
2년 이상	약관대출이율 - 2%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조(만기환급금)

① 회사는 적립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약관대출이율-2%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제7조(약관대출)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최초 가입시점에서 적용한 보통약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최초 가입시점에서 적용한 보통약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최초 가입시점에서 적용한 보통약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제4조(해약환급금)의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회사는 이 보험의 모든 보장계약(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을 말합니다)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진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1.보험료 충당 특약 자동갱신 추가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약」이라 합니다)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료 충당 특별약관(이하 「보험료 충당특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충당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종전의 보험료 충당특약(이하「갱신전 보험료 충당특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 충당특약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갱신된 보험료 충당특약(이하「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이라 합니다)의 적립기간은 갱신전 보험료 충당특약의 적립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적립기간으로 합니다.

③ 7.보험료 충당특약 제6조(환급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만기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자가 만기환급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만기환급금을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추가적립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료 충당특약의 적립기간중에 7.보험료 충당특약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정의한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어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충당특약을 갱신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갱신 보험료 충당특약 제1회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계약자가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보험료 충당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료 충당특약을 해

제합니다.

제4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가 갱신시점에서 보험료충당특별약관의 내용(이율체계,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약에서 정하진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보험료 충당특약을 따릅니다.

8.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무배당 삼성 Super보험의 특별약관 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단,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을 제외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장계약의 자동갱신)

① 보장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계약(이하 「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 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장계약(이하 「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내일 것
3.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자동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제3항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의무)를 적용합니다.

제3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보장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갱신보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보장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보장계약의 제1회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갱신보장계약의 책임개시)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책임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진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보장계약을 따릅니다.

9.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2.상해관련 특별약관」 및 「3. 질병관련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신체관련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신체관련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신체관련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신체관련 보통약관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에 따라 신체관련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부가된 상해관련 특별약관, 질병관련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단,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1-3.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전자거래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 및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28조(보험약관 등의 교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 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및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28조(보험약관 등의 교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계약자와 동일한 무배당 삼성 Super보험「3. 질병관련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가입한「3. 질병관련 특별약관」 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사망보장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대해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사망보장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제2조(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의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제1호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상해1】

후 유 장 해 지 급 률 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률(%)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6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률(%)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10
7)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률(%)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률(%)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률(%)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판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 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 - 상해2】

중대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상해(뇌손상/내장손상/척수손상)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상해名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1. 뇌손상	□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S02.0
	□ 머리바닥뼈의 골절	S02.1
	□ 안와바닥의 골절	S02.3
	□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S02.7
	□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8
	□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9
	□ 미만성 뇌손상	S06.2
	□ 경막위 출혈	S06.4
	□ 외상성 경막밑 출혈	S06.5
	□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S06.6
	□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머리내 손상	S06.7
	□ 기타 머리내 손상	S06.8
	□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S06.9
	□ 머리뼈의 압착손상	S07.1
	□ 기타 머리부분의 압착손상	S07.8
	□ 기타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 혈관의 손상	S09.0
	□ 머리의 다발성 손상	S09.7

상해名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2. 내장손상	□ 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	S26.0
	□ 기타 심장의 손상	S26.8
	□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S26.9
	□ 기타 폐의 손상	S27.3
	□ 기관지의 손상	S27.4
	□ 가슴기관의 손상	S27.5
	□ 가슴막의 손상	S27.6
	□ 가슴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	S27.7
	□ 기타 명시된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8
	□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9
	□ 가슴의 압착손상 및 가슴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 가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 복부,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S35**
	□ 지라 손상	S36.0
	□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S36.1
	□ 췌장(이자)의 손상	S36.2
	□ 위의 손상	S36.3
	□ 작은창자의 손상	S36.4
	□ 결장의 손상	S36.5
	□ 직장의 손상	S36.6
	□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	S36.7
	□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6.8
	□ 콩팥(신장)의 손상	S37.0
	□ 요관의 손상	S37.1
	□ 방광의 손상	S37.2
	□ 요도의 손상	S37.3
	□ 난소의 손상	S37.4
	□ 자궁관의 손상	S37.5
	□ 자궁의 손상	S37.6
	□ 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	S37.7
	□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	S37.8
	□ 복부,하배부 및 골반 부분의 압착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 골반 기관을 동반한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9.6

상해名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3.척수손상	□ 제1목척추뼈의 골절	S12.0
	□ 제2목척추뼈의 골절	S12.1
	□ 기타 명시된 목척추뼈의 골절	S12.2
	□ 목뼈의 다발성 골절	S12.7
	□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S12.9
	□ **목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S18**
	□ 등뼈의 골절	S22.0
	□ 등뼈의 다발성 골절	S22.1
	□ 등뼈원판의 탈구	S23.1
	□ 허리뼈의 골절	S32.0
	□ 엉치뼈의 골절	S32.1
	□ 꼬리뼈의 골절	S32.2
	□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S32.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골절	S32.8
	□ 허리뼈의 탈구	S33.1
	□ 엉치엉덩 및 엉치꼬리뼈 관절의 탈구	S33.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탈구	S33.3
	□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S14.2
	□ 팔 신경얼기의 손상	S1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신경의 손상	S14.6
	□ 가슴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 가슴척추의 신경뿌리의 손상	S24.3
	□ 허리척수의 기타 손상	S34.1
	□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S34.2
	□ 말총의 손상	S34.3
	□ 허리엉치척추 신경얼기의 손상	S34.4

주) 1.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위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을 보상합니다.

【별표 -상해3】

ASIA 분류표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미국척수손상협회)

구 분		손상정도
A	완전손상 (Complete)	제4,5번 천추 신경에 운동 및 감각신경 기능 소실
B	불완전 손상	손상척수이하의 운동기능은 없으나, 제 4, 5번 천추 신경을 포함한 감각신경 기능은 있음.
C	운동기능	손상척수 이하에 운동기능은 있으나, 검사근육(Key Muscle)들 중 1/2이상에서 근력이 3점 미만임
D	불완전 손상	손상척수이하에도 운동기능이 있으며, 검사근육(Key Muscle)들 중 최소한 1/2이 근력 3점 이상임.
E	정상	감각, 운동기능이 정상임

【별표 -상해4】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압궤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주)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상해5】

화 상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체간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해	L59

주)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질병1】

질병중증장해 판정기준

1. 팔·다리의 절단장해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3) 두 다리의 쇼파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경우
(4)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상 부위를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해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
(2)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에 중등도의 장해나 3관절에 경도의 장해가 두 팔 모두에 남았을 경우
(3)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에 고도의 장해가 남았거나 3관절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았을 경우
(4)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에 고도의 장해나 3관절에 중등도의 장해가 두 다리 모두에 남았을 경우
(5) 한 다리의 3대관절 모두에 고도의 장해가 남았을 경우

3. 손가락의 기능장해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4. 척추의 기능장해

(1) 척추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보행이 매우 곤란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5. 뇌병변장해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해로 일상생활의 이동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경우
(2)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정신지체로 지능지수가 49이하가 된 경우 (단, 노인성치매는 제외)

6. 시각 및 청각 장해

(1)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8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2)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3) 양측 귀의 평형기능이 소실된 경우

7.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8.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이동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9.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되어 아래의 장해중 2가지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지체장해가 동반 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1) 팔·다리의 절단장해

ⅰ)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ⅱ)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ⅲ)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을 잃은 경우
ⅳ)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ⅴ)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해

ⅰ)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고도의 장해가 남았을 경우
ⅱ)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고관절 또는 무릅관절의 가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
ⅲ)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고도의 장해가 남았거나 3관절의 중등도의 장해가 남았을 경우

(3) 손가락의 기능장해

ⅰ)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ⅱ)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ⅲ)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ⅳ)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4) 뇌병변장해

ⅰ)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해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경우
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정신지체로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가 된 경우(단, 노인성치매는 제외)

(5) 시각 및 청각의 장해

ⅰ)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ⅱ) 두 귀의 청력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ⅲ) 양측귀의 평형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6)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ⅰ)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경우

10.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되어 위 9.의 장해중 1가지에 반드시 해당되고 아래의 장해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 팔·다리의 절단장해
ⅰ)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을 잃은 경우
ⅱ)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부 이상에서 잃은 경우
ⅲ)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을 잃은 경우`
ⅳ)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
ⅴ)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해
ⅰ)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남았을 경우
ⅱ)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발목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
ⅲ)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에 중등도의 장해나 3관절에 경도의 장해가 남았을 경우
ⅳ)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10 이상 짧은 경우

(3) 손가락의 기능장해
ⅰ)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ⅱ)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ⅲ)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ⅳ)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ⅴ)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4) 척추의 기능장해
ⅰ) 척추에 고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

(5) 시각 및 청각의 장해
ⅰ)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ⅱ)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ⅲ) 양측귀의 평형기능이 감소된 경우

주) 각 장해의 판정시기 및 장해진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중 Ⅰ.총론의 3.(장애판정시기)와 7.(장애진단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팔·다리의 절단장해
   ①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첫째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2 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가락 뼈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무릎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경우"라 함은 무릎관절 절단을 포함하여 고관절이상 부분까지 절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2. 팔·다리의 기능장해
   ① 관절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관절에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③ 관절에 중증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⑤ 관절에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⑥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3. 손가락의 관절기능 장해
   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은 제1,2지관절의 굴산운동 범위 합산)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한 장해가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은 제1,2지관절의 굴산운동 범위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③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발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4. 척추의 기능장해

① "척추의 고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라 함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각각 1/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척추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보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척추에 고도의 장해가 남아 100m 이상의 지속적인 보행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로서 곤란정도가 척추의 기능장해의 정도와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척추의 기능장해는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이 있어야 하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5. 뇌병변 장해, 흉·복부, 장기의 장해

① "흉·복부, 장기의 뚜렷한 장해"라 함은 외부생식기를 포함하여 심장, 폐, 능막, 횡격막 및 위, 신장, 비장, 간장, 소장, 대장 등 흉복부 장기에 타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또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일상생활의 이동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목발,관절보조기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신체보조장구)이 필요한 경우

③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④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ⅰ) 이동동작

ⅱ) 음식물 섭취동작

ⅲ) 옷 입고 벗기 동작

ⅳ)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ⅴ) 목욕 및 세면

6. 청각의 장해

① 양측 귀의 평형기능이 소실된 경우
양측 귀의 평형기능의 소실이 객관적으로 있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

② 양측 귀의 평형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양측 귀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③ 양측 귀의 평형기능이 감소된 경우
양측 귀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걸을 때 중앙에서 60cm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7.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①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유동식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②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③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다음 4종의 어음 중 2종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구순음(ㅁ,ㅂ,ㅍ)
- 치설음(ㄴ,ㄷ,ㄹ)
- 구개음(ㄱ,ㅈ,ㅊ)
- 후두음(ㅇ,ㅎ)

④ 말하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
위 ③의 4종의 어음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별표 -질병2】

기질성치매 분류표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 되다」라는 것은 다음의 1.과 2.에 모두 해당되는 「기질성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1.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치매」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Ⅰ.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Ⅱ. 혈관성 치매	F01
Ⅲ.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Ⅳ. 상세불명의 치매	F03
Ⅴ.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질병3】

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

1.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두손 두발로 기거나, 무릎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몸을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위에서 조금 밖에 이동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다.

2.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신체의 장해에 의해 요양중이어서 입을 통한 영양섭취 및 식사가 불가하여 혈관 또는 신체에 튜브를 통해 수액제를 삽입하거나 유동식으로 영양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함)

3.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배변을 닦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혼자서는 배변을 위해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

③ 잦은 실금(失禁)으로 인하여 기저귀 또는 특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치료를 위한 절대안정으로 침상에서 특수용기를 사용하여 배설행위를 해야 한다.

4.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몸을 씻거나 닦거나 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욕조에 출입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다.

5.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별표 -질병4】

문제행동 분류표

1. 배회한다. 또는 길을 잃는다.
2. 과식,거식 또는 이식(異食, 음식물이 아닌 종류를 섭취)을 한다.
3.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또는 신체의 배설물을 묻히거나 만지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한다.
4. 폭력행위 또는 파괴행위를 한다.
5. 흥분해서 소동을 피운다.
6. 불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7. 물건을 훔친다. 또는 마구 물건을 모은다.

【별표 -질병5】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질병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질병7】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주) 1.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암병소,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별표 -질병8】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질병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질병10】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N39
2. 치질	I84
3.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누공)	K60
4.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	K61
5. 항문 및 직장의 기타질환	K62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비용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제3항(끼어들기 금지) 또는 제56조(갓길통행금지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

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